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협조 요청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용기는 검사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나, 부적합 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 파손, 내용물 유출에 따른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도 시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는 병의원 등 회원사에 "붙임"과 같이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부적합 용기 사용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협조 요청사항.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대한수의사회

주무관

정명환

행정사무관

김두형

과장

전결 2014. 5. 27.

김동구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1905

(2014. 5. 27.)

접수

우 427-7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704호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362 팩스번호 044-201-2376 / chkiss38@me.go.kr / 대국민 공개

인간과 생물의 아름다운 공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협조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실태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 의료폐기물을 발생시부터 수집·운반 및 처분시까지 보관하는 용기(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용기가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실태

- 병·의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용기의 상당량이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적합 전용용기를 사용

※ (폐기물관리법) 검사받은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1차 3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 1천만원)

□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협조사항

○ 검사받은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할 것

- 병·의원 등에서는 검사를 받은 적합한 전용용기인지를 반드시 사전 확인·조사(검증) 후 사용

<문제 사례>

- ☞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전용용기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12), 부적합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약 60%)
- ☞ 일부 사용자는 전용용기 공급 루트 및 검사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조사(검증) 없이 공급해 주는 불량 제품을 막연히 사용하는 사례 등이 있음